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4-02

울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	2016가단23570 배당이의
원 고	A
피 고	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
변 론 종 결	2017. 12. 6.
판 결 선 고	2018. 2. 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이 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. 10. 21.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,308,584원을 삭제하고,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고친다.

이 유

1. 사실관계

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,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4-02

○ 원고는 2011. 5. 23. [redacted]구 C 대 415㎡(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)를 취득하였다[을 3].

○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하여 아래의 각 세금을 부과하였으나,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[갑 2, 을 2].

세 목	과세연도	납부기한	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		
			계	지방세액	가 산 금
재산세(토지)	2011	2011-09-30	1,803,190	1,087,710	715,480
등록면허세(면허)	2011	2011-12-31	18,540	18,000	540
재산세(토지)	2012	2012-09-30	2,016,360	1,402,550	613,810
등록면허세(등록)	2012	2012-03-31	17,278,290	11,005,440	6,272,850

○ 피고는 2013. 5. 16. 원고에게 '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'에 관하여 취득세 35,024,830원과 재산세 등을 재차 부과하였다[갑 2, 3,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칭한다].

○ 원고는 이 법원 2015구합1605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[갑 3].

○ 한편, D의 채권자인 원고는 D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(F 중복)로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 배당을 받을 예정이었다[갑 2].

○ 그러자, 피고는 2016. 1. 18.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에 대하여 압류금액 총 102,708,150원의 압류처분(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칭한다)을 집행하였다. 위 체납액에는 2011-2012년 체납액은 물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[갑 2].

○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경매법원은 위 압류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4-02

을 같은 법원 2016년 금제432호로 공탁하였다[갑 1].

○ 원고는 2016. 4. 28. 위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[갑 3]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○ 한편, 위 공탁금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진행된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6. 10. 21.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9,308,584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[갑 1].

○ 피고는 2016. 6. 10. 원고에게 재차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32,760,290원을 부과하였다[갑 4].

○ 원고가 위 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법원 2017구합262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, 이 법원은 2017. 11. 30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,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[2017. 12. 6.자 참고자료].

2. 판단

가.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

조세에 관한 체납처분으로서 재산압류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된 조세채권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,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하다 하여 판결에 의해 취소로서 확정된 경우에는 재산압류처분은 그 원인을 상실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(대법원 1973. 8. 31. 선고 73누72 판결 등 참조).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그 조세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그 원인을 상실하여 위법하다.

그러나 다른 한편으로,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4-02

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,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).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유 및 2016년에 2차 부과처분을 내린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고,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.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일부에 대하여 위법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별도로 취소되지 않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 압류처분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.

또한,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외에도 이미 2011-2012년도 재산세 등 2,100만 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,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.

나. 배당 순위

원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적어도 2,100만 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, 경매법원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당금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, 그 배당금 액수가 위 조세채무를 초과하지 않음은 명백하다.

따라서 배당법원이 배당금을 피고에게 1순위로 우선 배당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4-02

없다.

이에 반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전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우선배당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 기각한다.

판사 서영효